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 : 25명
2. 입소대상 :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또는 3, 4, 5등급(시설급여) 판정 받은 자
3. 입소절차 : 입소신청(대기자 접수)
 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시설급여 확인 후, 입소신청
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청에 입소이용의뢰서 신청
 - 로댐요양원 내방 및 전화로 상담하여 입소신청
4. 입소시 제출서류
 - ① 장기요양인정서(건강보험공단)
 -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(시설급여 확인/3~5등급), (건강보험공단)
 - ③ 경감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), (건강보험공단)
 - ④ 가족관계증명원 1부(입소자 기준)(행정복지센터)
 - ⑤ 주민등록등본 1부(행정복지센터)
 - ⑥ 건강진단서 1부(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), (의료기관)
 - 드시는 약에 대한 의사 처방전 1부(입소시 드시는 약 지참)
 - 현재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1부
 - ⑦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(개인)
 - ※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추가서류
 - 통장사본 1부
 - 요양원시설 주소지로 주소이전
5. 계약기간 :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되며, 장기요양등급갱신과 관련된 추가계약을 포함한다.
6. 계약목적 :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서비스로 대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7.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: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를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시설 입소 비용

■ 입소 보증금 - 없음

■ 입소 비용 : 2025년도 기준 (30일 기준)

구 분	급 여 비 용					비급여 부담금		본인부담금 총 액
	급여합계	1일수가	일수	공단부담	본인부담(A)	고정 비급여(B)		
				80%	20%	식재료비	구성	A+B
1등급	2,713,500	90,450	30	2,170,800	542,700	210,000	1일/3회 6,000원 간식 1일/2회 1,000원	775,700
2등급	2,517,300	83,910	30	2,013,840	503,460			713,460
3,4,5등급	2,377,200	79,240	30	1,901,760	475,440			685,440
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(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12%)				1등급	325,620			535,620
				2등급	302,072			512,076
				3,4,5등급	285,264			495,264
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(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8%)				1등급	217,080			427,080
				2등급	201,384			411,384
				3,4,5등급	190,176			400,176
기초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					면제			생계비

■ 비급여 항목 비용

항 목	내 용	금 액	비 고
식 재료비	1식 2,000원*3식	1일 6,000원	
간식비	1회 500원*2회	1일 1,000원	
상급침실 이용료	2인실	80,000원/월	
	1인실	160,000원/월	
진료,약제비	외래 진료 및 약제비 비급여액	실 비	
이 미 용	외부,방문 이미용		재능기부 봉사 (외부 업체 이용시 실비)
요청 물품	보호자, 또는 요청에 의한 물품	실 비	

※ 상급침실 이용시 임종 및 간염병일 경우는 예외

※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(보호자)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.

※ 수납방법 : 시설명의로 지정계좌에 송금.

8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
- ②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
- ③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,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
- ④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, 프로그램, 시설내외 행사,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
- ⑤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, 외출, 외박, 퇴소, 전원 등에 관한 권리
- ⑥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
- ⑦ 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- ⑧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
- ⑨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

-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
- ② 외출 · 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.
- ③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규정을 준수할 의무
- ④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
- ⑤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
- ⑥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의무
- ⑦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,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
- ⑧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할 의무
- ⑨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 부담분을 매월 수납해야 할 의무
- ⑩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음.

9. 계약해제 : 입소자(보호자)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소자(보호자)와 시설 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-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때
- 건강검진 결과 법정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